

의안번호	제24호
의결연월일	2018. 3. 13.

## 논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6일 논산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2018년 3월 13일,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# 2. 제안 설명요지 (제안 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-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고 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인 ‘화재안전취약가구’에 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
-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소화기,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